



「중대재해처벌법 적극적 이행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안)

2023. 3.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무국 총무과]

「중대재해처벌법 적극적 이행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26. 공포, '22.1.27. 시행) 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I. 계획 개요

1 수립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이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및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 우리대학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추진
- 교직원 등 종사자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중대재해 사전방지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2 적용 대상

- 군산대학교(총장 : 경영책임자) 소속학과·부서 등
 - 대학본부(본1~13), 대학원(4)
 - HASS대학(16개 학과), ONSE대학(4개 학부, 18개 학과), 본부직속 특성화대학부(5개 학부)

- 교육기본시설(2), 지원시설(4), 부속시설(21), 연구시설(26), 학생군사교육단, 대학발전지원재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중대재해처벌법령 이행과제 체계

중대재해처벌법령 상 의무 [9개]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4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조치 의무**를 부여

* 경영책임자(= 군산대학교총장 = 사업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준수 (관련 규정 이행)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조치 (유해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계·설비나 위험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이상, 요양필요 부상자 동시 2명이상(3개월),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이상, 동일사고 부상자 2명이상(6개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이상

Ⅳ. 안전·보건 목표 및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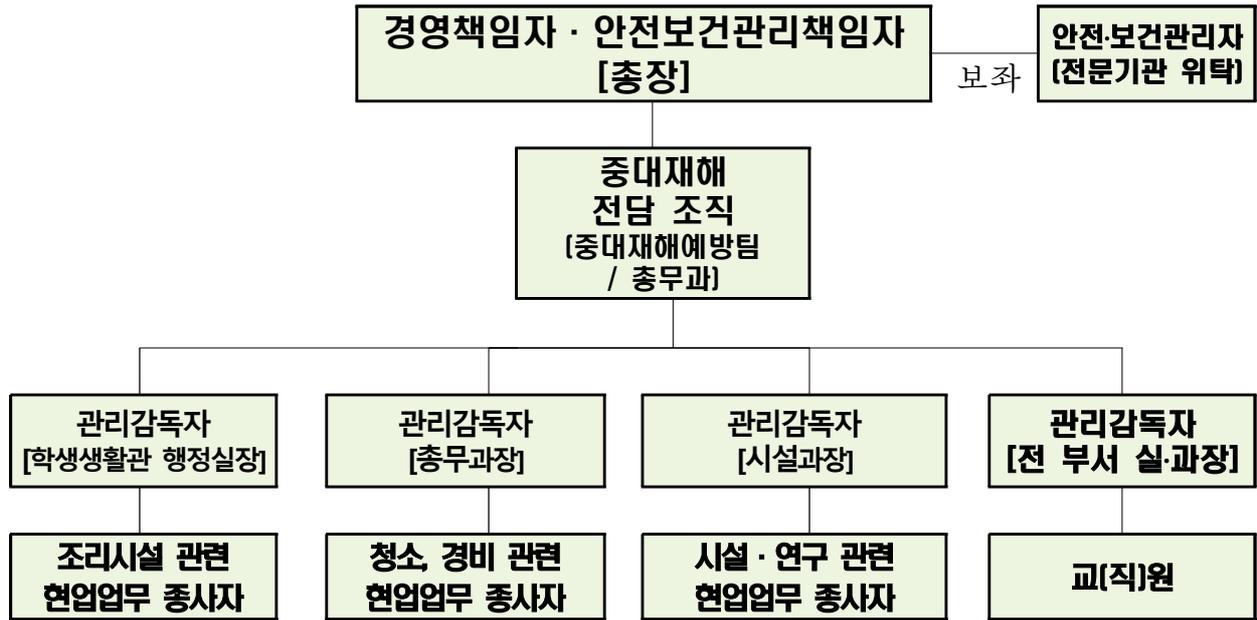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목표	우리대학 산업안전 역량강화로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
전략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과제	세부계획
1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정착	▶ 모든 종사자 인식 확산, 홍보 - 배너, 교내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2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 위험성평가 등 현장실사 및 방문·컨설팅 (반기 1회 이상)
3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관련부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 점검 (분기 1회 이상)
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권한에 따른 업무수행 점검 (반기 1회 이상)
5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수시점검 및 관리감독자 부서 내 의견수렴 등 방법 활용 - 현장 방문점검 시, 안전보건119, 간담회 등
6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 매뉴얼 숙지 및 사고발생 대비 훈련 등
7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 지속적 이행 점검 및 방문·컨설팅 통한 인식 확대(반기 1회 이상) 및 개선
8	■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	▶ 전담조직 인력 보완 및 전문성 제고

V.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제 구축

□ 안전관리 체계



□ 조직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비고
중대재해 총괄관리팀	< 학내 안전보건 총괄관리 > ■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 부서별 안전·보건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반기 1회)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의무이행 관리	총무과
관리감독자 및 각 부서장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지휘·감독 > ■ 산업안전보건법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숙지 및 준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 및 보건 조치 등 ■ 도급·용역위탁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여부 평가 지속 실시 ■ 부서별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수립(반기 1회) 및 감소대책 실행 ■ 안전보건의날 부서별 체크리스트 작성·제출(매월 1회)	전부서
안전·보건 관리자 (외부위탁)	< 주요 안전관리 업무 위탁 > ■ 안전점검(산업안전보건법) ■ 정밀(특별) 및 정기안전지도점검(매월 1회) ■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수립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순회 실시(일부, 매월 1회)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료제공 및 지원 등	위탁업체

Ⅶ. 향후 추진사항

- '23년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시행* 및 점검 관리('23.3.~12.)
 - *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선임 재정비,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실시 등
- 기관별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수립·결과보고('23.3.~12.)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 사고에 따른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반드시 포함·수립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의무이행 평가[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이행 점검(공통)[붙임5] 실시(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말)
 - ※ [붙임5-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직종별) : 자율점검 시 활용